

#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31.  
발의자 : 김도읍 · 이진복 · 김재원  
한선교 · 박덕흠 · 김현아  
장석춘 · 김정재 · 홍철호  
이은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석탄공사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.

이러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.

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##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재무건전성의 유지)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2조의2(재무건전성의 유지) 공</u> <u>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</u> <u>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